

산업재해예방정책과 달라진 안전보건제도

(1992년 4월 노동부)

【 目 次 】

- I. 산업재해예방정책과 '92년도 사업설명
- II. 달라진 안전보건제도 설명
- III. 맷음말

I. 산업재해예방정책과 '92년도 사업설명

- 『산업재해예방정책과 금년도 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도에 공업화 이후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만, 그간의 성장발전 과정에서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정책부재, 사업주의 재해예방시설 투

자 소홀로 많은 재해가 발생하여
 - '64년도 산재보험제도 시행이래 '91년 말 까지 2,568,624명이 재해를 당하여 31,601 명이 사망하고 2,181,324명이 부상당하였으며 26,291명이 직업병에 이환되고 부상자중 신체장애자도 329,408명이 발생하여
 - '91년도 산재적용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 7,922천명을 기준으로 볼 때 3명당 1명이 재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재해로 인한 손실도 지금까지 재해자 개인에게 산재보상금이 3조 1,959억 9천9백 만원으로 간접손실을 포함할 때 경제적 총 손실액은 15조 9,799억 9천5백만원에 달하여 심각한 수준에 와 있으며
 - 일본, 대만, 싱가폴 등 동남아 공업국보

【 재해발생현황 및 경제적 손실 추정액】

| 구 분 | '89 | '90 | '91 |
|------------------------|---------|---------|---------|
| 재 해 율 | 2.01 | 1.76 | 1.62 |
| 재 해 자 | 132,127 | 132,893 | 128,169 |
| (사 망 자) | (1,724) | (2,236) | (2,299) |
| 경 제 적 총 손 실 액 (억 원) | 18,465 | 26,967 | 35,076 |

*'91년 업종별 재해율 광업 11.32, 제조업 1.69, 건설업 1.61, 운수·통신 1.87, 기타 0.75

【재해율, 도수율, 강도율 국제비교】

| 구 분 | | 재 해 율 | 도 수 율 | 강 도 율 |
|------|-------|-------|-------|-------|
| 한 국 | ('90) | 1.76 | 6.70 | 2.30 |
| | ('91) | 1.62 | 6.36 | 2.34 |
| 일 본 | ('89) | 0.52 | 2.05 | 0.20 |
| | ('90) | 0.53 | 1.95 | 0.18 |
| 싱가포르 | ('88) | 0.35 | 4.0 | 0.30 |
| | ('89) | 0.38 | 4.2 | 0.42 |
| 대 만 | ('88) | 0.88 | 3.7 | 0.42 |

다도 높은 실정입니다.

-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계, 기구 및 설비의 노후화, 유해 화학물질 사용량의 증가로 직업병 이환자가 속출하여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마져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와같은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 산업재해 문제는
 - 재해를 당한 본인과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료 근로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기능인력을 잃어버리고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등 손실을 초래하여 기업발전을 가로막을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근로자들의 높아진 안전보건의식과 더불어 작업환경개선등이 노사문제에 있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건전 노사관계를 해치는 요인이 되고
 - 재해자의 누증은 사회불우계층을 형성하여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성장발전을 참식하는 주요요인이 되므로
 -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지속적인 성장발전은 물론 복지사회 구현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때문에 정부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80년도초에 제정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을 '90. 7. 전면 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행정기구를 확충하였으며, 재해예방기술을 개발·보급하는등 우리의 실정에 부합되는 다양한 시책을 법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재해예방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91년부터 '96년까지를 계획년도로 하는『제1차 산업재해예방 6개년계획』과 지난해 원진레이온 사건을 계기로 수립한『직업병예방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산업재해예방 6개년 계획에 의한 목표는
 - '96년말까지 재해율은 선진국 수준인 0.93%로 줄이고
 - '91년이후 6년간 총 4,430억원의 재원을 투입, 재해자 195천명을 감소시키고 산재보상금(직접손실)도 2조 2,260억원을 절감시키는 것이며,
- 또한 근로자 건강관리의 내실화, 작업환경의 전문성제고, 직업병연구 및 치료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공급등 직업병에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기하는 것입니다.
- 계획기간중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을 말씀드리면

【년도별 목표】

| 구 분 | | '90기준 | '91 | '92 | '93 | '94 | '95 | '96 | 평균 |
|--------|-----|-------|------|------|------|------|------|------|--------|
| 계 획 | 재해율 | 1. 71 | 1.49 | 1.33 | 1.20 | 1.09 | 1.00 | 0.93 | 0.13%P |
| | 감소율 | | 13 | 11 | 10 | 9 | 8 | 7 | 9.6% |
| 실 적 | 재해율 | 1.76 | 1.62 | | | | | | |
| | 감소율 | | 7.95 | | | | | | |

- '91년도 목표재해율은 1.49%, 감소율은 13%이나 실적은 재해율 1.62%, 감소율 7.95%
- '90년대비 재해율은 0.14%P 감소되어 계획년도중 평균 재해율 감소분 0.13%P은 초과하였으나 감소율은 평균 감소율 9.6%에 약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남

*우리와 재해발생 빈도가 비슷한 일본의 제4차 노동재해방지계획(기간: '73-'77년)의 평균 감소율은 6%임(한·일간 재해도수율을 비교시 우리의 '90년 (6.70)과 일본의 '73(6.67)이 비슷함.)

【투자계획】

| '91 | '92 | '93 | '94 | '95 | '96 |
|-----|-----|-----|-----|-----|-----------|
| 346 | 526 | 643 | 787 | 976 | 1,152(억원) |

- 사업장내에 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등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하고
- 재해를 유발하는 유해·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에 대한 일관된 안전성을 확보하며
- 중소기업의 재해예방지원을 위한 안전보건기술지도 및 지원을 강화하고
- 점차 증가하는 건설업, 채석업 등 옥외형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 추진하며
- 화재, 폭발, 추락, 붕괴등으로 인한 중대재해 방지대책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 독일·일본등 선진국과의 안전보건 기술교류등 안전보건분야의 국제화도 추진하여 근원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체제도 확립할 계획입니다.
- 한편으로 범국민적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재해예방 교육을 확대실시하고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며

- 재해예방사업의 민간주도화를 위하여 공단 및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지도감독 체제를 정비하고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이러한 추진방침에 의거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이어 계획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간략히 금년도의 사업을 소개 드리자면
 - 기업의 자율안전보건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 30~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할 안전보건관계자를 배치하게 하고 안전보건관계자의 역할제고를 위한 직무지침을 제정·보급하며, 500인 이상 근로자 사용업체는 규모별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할 부서의 설치를 권장하는 등 재해예방조직을 완

【 규모별 전담부서 권장내용 】

500인이상 : 과 / 3,000인이상 : 부 / 5,000인이상 : 이사

비하고

- 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 대표참여, 노사합동점검등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에 근로자 참여기회를 확대시키며
- 300인이하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전체 재해의 60%이상을 차지 ('91년 : 68.3%, 87,573명)하고 있음을 중시, 이들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활동 지원을 위하여
 - 재해예방시설·장비구입에 따른 자금을 융자해 주고 융자자금도 매년 늘려나가 '96년까지 1,500억원을 조성하여
 - *년도별 융자금 현황 : '90 : 30억원, '

91 : 167억원, '92 : 201억원

- 재해예방시설투자업체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및 관세법에 의한 조·관세감면도 해주고 있으며
-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안전점검등 각종 기술지도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지방노동관서별로 업종별, 규모별로 산재취약업체 6,000개소를 선정하여 이들 업체에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 취약요인을 개선시키며
- 각종 감독·점검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감독을 실시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 조세·관세감면제도 】

| 구분 | 조세 법적 근거 | 관세 |
|----------|--|---|
| 법적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감면 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4호 ○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 ○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별표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제28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28조의 6 제1항 제6의 2호 ○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18호 및 제 20조 제6항 별표 2 및 제21조 제2호 |
| 감면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예방시설 40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 3. 3 시행규칙개정으로 36종에서 40종으로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및 직업병예방용 물품중 실수요자(당해조합, 협회포함)가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여 수입한 경우 관세감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무부장관이 고시한 물품 6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 3. 16 시행규칙 개정으로 58종에서 66종으로 확대 |
| 감면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방법중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의 3% (국산기자재 경우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완료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자산취득가액의 30% (국산기자재 경우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물품 관세액이 80%를 경감 |

【산재취약업체 지도·감독내용】

- 정기·수시·특별감독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이상 제업체, 건설현장, 화학·화약류취급업체, 중금속 유기용제·작업환경 불량,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4,000개소.
- 특별지도 : 직업병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업체등 1,000개소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사업장, 정기·수시·특별감독결과 개선에 3월이상 소요되는 사업장 1,000개소

- 최근 신도시 지하철건설공사 등 건설물량의 증가와 산업기능·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고령자, 미숙련자 등 신규채용자의 증가로 재해가 급증하여 제조업등에서의 재해감소분을 잠식시키고 있는 건설재해 및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 재해다발건설현장(350개소), 신도시·

지하철공사등 대형 건설공사현장(311개소)에 대하여는 등급별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조직,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실적 등을 점검하고 상주기술지도사무소도 확대(현1개소→2개소) 설치하며

- 특히 재해다발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건설업분야 재해증가 원인 분석】

- 건설물량 : '90년 20조 7천 2백억원, '91년 31조 3천 3백억원(추정), '90년대비 51.20%증가
 - '90년도에 비해 피해자수 5,200명, 사망자수 128명, 재해율 0.07%P증가
- 전체 재해자중 건설업 재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년도의 27.92%에 비해 '91년도는 33%로 크게 높아졌음
- 건설용 기계에 의한 재해자가 '90년도 1,395명에서, '91년도의 8,359명으로 499.12%증가

※ 도급순위 30위내 건설업체의 재해발생 현황

- 재해자 : 11,220명 ('91 건설업 전체 피해자(42,302명)의 26.52% 차지)
- 사망자 : 255명 ('91 건설업 전체 사망자 (801명)의 31.83%차지)

※ “사망사고발생사업장 관계자 사법처리 강화요청에 따른 업무지시” (환경 23100-34('92. 2. 12))라는 제목으로 대검찰청에서 전국지방 검찰청 및 지청에 시달한 공문 내용

- 건설공사 현장의 중대재해증
 - 추락·낙하 방지용 안전망이 부적정하여 추락사망한 재해
 - 건설용 리프트의 가이드 레일, 권과방지 장치 불량으로 인하여 추락사망한 재해
 - 엘리베이터 홀등 개구부에 덮개, 난간의 불량으로 인하여 추락 사망한 재해
 - 고소작업자에게 안전대·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아 추락사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사업주, 현장소장등 공사관계자를 구속하는등 강력한 사법조치를 할 것.

- 작업중지, 사용중지 조치를 하고 건설 부등 관계부처의 협의 입찰 참가제한 조치도 할 계획이며
- 중대재해 발생시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안전장치 미비로 인한 재해가 전체재해의 60%이상 ('91년 경우 60.39% 77,402명) 차지함을 중시하여 근원적 안전성 확보차원에서(기계, 설비는 태어날 때부터 안전해야 함)
- 프레스등 위험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설계·완성·성능 및 정기검사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 건설현장 및 화학·건조설비 등의 설치·

- 이전·변경시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도 철저히 하며
- 성능불량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유통 규제 및 기술지도를 강화하여 성능향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직업병예방과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의 일환으로서 지난해 원진레이온 사건을 계기로 수립된 직업병예방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 이미 직업병관정을 위한 특별진찰기간 중 상병악화방지를 위한 치료비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였고 ('91. 12. 12),
 - 의학적으로 상당인과 관계만 있으면

【검사대상(법제34조, 규칙제58조】

- 설계 및 완성검사 :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압력용기
- 설계 및 성능검사 : 프레스, 공기압축기, 보일러
- 정기검사 : 위 기계, 기구 7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법제48조, 규칙제120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이상인 사업
 - 화합물과 화학·석유·석탄·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제1차 금속산업
 -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제조업
 - 가스업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 금속 기타 광물의 용해로 (용량이 1톤이상인 것에 한함)
 - 화학설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함)
 - 건조설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함)
 - 가스집합용접장치 (이동식 제외)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
 - 지상높이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 최대지간길이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
 - 터널건설등 공사
 - 제방높이 20미터이상인 댐건설등 공사
 - 게이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3킬로그램이상인 잠함공사
 - 깊이 10.5미터이상인 굴착공사
 - 기타 건설설비·크레인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위험작업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성능검정대상 보호구(법제35조 및 시행령 제28조)】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안전장갑, 보안면, 방진마스크, 귀마개 또는 귀덮개, 방독마스크

업무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업무상질 병 인정기준을 개정하였고 ('91. 11. 1),

-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직업병연구기관인 산업보건연구원의 발족('92. 1. 30), 산업위생과 설치,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증원(49명)등의 조치를 한 바 있으며
- 동 대책의 구체적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도 금번 산업안전보건법시행 규칙등의 개정으로 가시화하였습니다.
- 동 규칙의 달라진 내용은 잠시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외 직업병 상담실 명칭을 건강 상담실로 바꾸고 설치도 확대하며, 건강체조 보급 등 건강증진 방안을 개발하는 등 건강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 직업병유소견자 발생사업장등 취약업체 특별관리를 통하여 직업병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을 위하여 유해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방법을 표준화하고, 유해작업 도급인가, 작업

환경시설 전문제작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고

- 작업환경 표준모델 개발·보급 및 시범 사업장(6개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및 제조·사용 금지, 허가물질 관리철저 및 유해물질 표시제 정착등을 지도하고
- 산업보건전문연구의 활성화을 위하여
 - 직업병예방·진단, 치료 등을 담당할 의료인력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산업의학을 전공하는 의사등에 대하여 장학금을 주고
 - '92. 1. 30 설립된 산업안전공단 산하 산업보건연구원을 서울대병원과 연계, 운영하고, 또한 직업병예방에 한발 앞선 일본으로부터 기자재 및 기술이전도 받아 직업병연구에 국내최고의 권위 있는 기관으로 육성할 것이며
 - 산업보건전문연구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비 및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 진폐예방 및 진폐 이환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건강 상담실 설치】

-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 공단기술지도원, 보건협회

* 유해성심사 대상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존화학물질(6,917종)이외의 물질로서 새로이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화학물질

* 제조·사용금지 물질 : 황린성냥, 벤지딘과 그염(벤지딘염산염 제외), 4-아미노디페닐과 그염, 4-나트로디페닐과 그염비스테로, 베타나프탈민과 그염등 7종

* 제조허가 물질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염, 알파나프탈아민과 그염, 염소화 비페닐(PCB)등 9종

* 유해성 표시대상물질 : 사염화탄소, 벤젠, 이황화탄소 등 103종

- 진폐검진을 담당할 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전국 주요광산 5개업체를 선정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며, 진폐예방교육 확대(광산작업반장, 보안관리자, 근로자등 3,000명 대상)등 진폐예방 사업을 확충하고
- 진폐위로금 및 장학금지급, 직업훈련 등을 통한 생활안정도 도모할 계획입니다.
- 교육적 원인에 의한 재해가 매년 60%(’91년 : 62.04%, 79,512명)을 넘고 있음을 중시하여 범국민적 산재예방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산업재해예방의식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 재해예방 기술개발보급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 각종 재해예방기술개발 및 연구를 활성화시키며
 - 한독·한일협력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선진국과의 기술협력도 강화해 나가며
 - 재해예방 기술보급체제를 확대하기 위한 공단기술지도원을 금년중에 2개소 증설하고 기술상담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92. 3. 31현재 1차의료기관 15개소, 1, 2차 의료기관 9개소

【생활안정 내용】

- 진폐위로금 : 산재보상보험금의 60/100
- 장 학 금 : 중·고등학교 학비전액(1인당 2인이내의 자녀)
- 직업 훈련 : 해당 훈련비용 및 식비전액

【교 육 대 상】

- 법정교육(24,990명)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자체 검사원, 개선계획 수립·시행 사업주 및 법인
- 일반교육(36,470명) : 관리감독자, 노조간부, 실업계교사 대상
- 사내교육 : 신규채용자, 작업전환·유해위험 업무종사근로자
- 직업병예방교육 : 노사단체, 사업주, 근로자, 노조간부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등 사업장내 안전보건관계자의 자질향상과 직무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과 근로자, 관리감독자등의 안전보건과 생활화를 위한 사내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 무재해운동 참여를 계속 확대하고 초기법을 개발보급하고
- 7.1-7.7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 각종 안전보건행사를 실시하여 신문·TV등

- 또한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감독면제, 각종 기술지도등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속·입건, 작업중지, 사용중지 등의 제재조치를 통해 불이익을 주는 등 산업안전보건 법령준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 근로감독관을 150명 증원하고 전문성을 보강시키고
 -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조치 기준을 철저히 적용시켜 나가며

【무재해 참여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 대상 | 계 | '89-'90 | '91 | '92. 2월 | 비고 |
|--------|--------|---------|-------|---------|---------------|
| 67,932 | 24,699 | 19,997 | 4,087 | 615 | '92년 계획 3,000 |

【공단기술지도원 설치지역】

- 서울남부, 서울북부,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전주, 창원, 수원

【'90, '91년도 행정·사법조치실적】

- 조치내용별

(단위 : 개소)

| 구분 | 총계 | 행정처리 | | | 사법처리 | | 조치종 |
|-----|--------|--------|-------|-----|-------|------|-----|
| | | 시정지시 | 경고 | 과태료 | 입건 | 구속 | |
| '90 | 15,273 | 14,076 | — | — | 1,197 | (2) | |
| '91 | 11,724 | 6,001 | 4,312 | 5 | 1,340 | (12) | 66 |

- 위반내용별

(단위 : 건)

| 구분 | 총계 | 안전관리체제 | 유해위험방지조치 | 감독 및 명령 | 근로자보건관리 | 기타 |
|-----|--------|--------|----------|---------|---------|-----|
| '90 | 24,518 | 1,683 | 18,063 | 963 | 2,927 | 882 |
| '91 | 34,057 | 2,843 | 25,127 | 593 | 4,541 | 953 |

- 특히 경미한 법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 재해예방 민간주도화를 위한 공단 및 재해예방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상 간략히 말씀드린 금년도 사업이 초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II. 『달라진 안전보건제도』 설명
- 다음은 직업병예방종합대책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제·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등 4개 규칙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근로자 건강진단의 내실화를 위하여
 - 종래 근로자 건강진단시기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어 부실검진이 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 건강진단 실시시기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하고
 -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2월말까지 지방 노동관서에 건강진단 실시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
- 건강진단 실시시기를 지방노동관서장이 직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9조의 2내지 제99조의 4)
 - 또한 유해작업종사 근로자에 대한 특수검진은 진단실시 20일전에 유해부서별 검진 계획서를 제출케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비교하여 검진대상자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99조의2 제2항)
 - 내실있는 검진으로 직업병이환여부의 조기발견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검진항목도 조정하여
 - 채용시 검진의 경우 치과검사를 추가하고, X-선 검사도 간활을 직활로 하며, 혈당검사를 삭제하였고,
 - 일반검진도 감마 G.T.P검사를 추가하고,
 - 특수검진은 유해인자별로 검진항목을 추가 또는 보완하되,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카드뮴, 크롬, CS₂, 납) 1차 검진항목과 2차 검진항목을 통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2차검사를 생략하도록 하여 검진소요시일을 단축도록 하였습니다.(제100조)
 - 또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건강진단 실시기관에 대한 정도관리제를 도입하여 검진수준 및 검진기관 종사자의 자질의 향상시킴은 물론 검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도록 하였습니다.(제103조의 2)
 - 검진결과에 대한 통보방법도 개선하여 종래 사업주가 검진결과를 의료기관으로 전달받아 근로자에게 통보하던것을 건강진단결과 질병유소견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기관이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하므로써 검진결과 은폐로 근로자 건강이 악화되는 사례를 방지도록 하였습니다.(제105조 제1항)
 - 현행 건강진단결과 통보 양식이 검진 결과만 나타내도록 되어있어 근로자들이 잘 이해하기 어렵고 자신의 건강관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점을 감안 건강진단개인표의 뒷면에 유해요인별 취급시 주의사항, 응급 및 예방조치, 건강관리를 위한 일상주의 사항 등을 명기하여 안내해 주므로써 작업과 생활에서 자신의 건강보호에 관심을 갖도록 건강진단개인표의 양식을 보완하였습니다.(제105조)
 - 또한 다른법에 의한 건강진단에 받은 경우 근로자 검진을 면제해 주는 범위를 현행 항공법에 의한 검진이외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식품 접객업체 한함)에 의한 검진까지 확대하여 중복검진으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와 민원의 소지를 제거하였습니다.(제99조 제5항)
 - 한편 매년 2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작업환경이 양호하고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년1회 이상으로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자율에 의한 작업환경개선 투자를 촉진시키도록 하였습니다.(제99조 제3항)
 - 이 규칙은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2회이상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해·위험부서의 작업환경측정 횟수를 최근 3년간 직업병 유소견자가 없고 1년 간의 측정결과가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 1년에 1회이상 측정만 하도록 완화하여 사업주의 자율적인 작업환경개선 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검진실시주기와의 연계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제93조 제 2항)

※ 이러한 건강진단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 사업주가 정기적 검진을 미실시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근로자가 받지 않았거나 사업주가 건강자인 실시 결과를 홍보하지 않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작업환경측정대상에 비해 작업환경측정 기관이 부족하여 제때에 측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현행 비영리법인, 의료법인외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을 작업환경 측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측정기관지정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제95조)

– 건강진단실시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실시와 병행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해서도 정도관리제를 도입하고

- 정도관리 불참·불합격 기관에 대해서는 일시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측정기관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측정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제97조 및 제97조의 2)

- 또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에 분진, 연, 유기용제, 소음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 외에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었던 코우크스 제조·사용 작업장을 추가하였습니다.(제93조 1항)

- 한편 신종 직업병 출현에 대비 작업환경측정의 전문화를 위하여 지역별 유

해인자별(예 : 연, 카드뮴, 석면, CS₂)로 작업환경전문측정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제97조의 3)

○ 또한 이 규칙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제33조내지 제45조)

- 사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조정하여

- 모든 근로자들에게 월 2시간이상씩 실시하던 것을 생산직 (2시간)과 사무직 (1시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교육도 받도록 하여 민원을 야기하였던 현행 제도를 고쳐 관리감독자로서의 안전 보건교육(2시간)만 받도록 하였으며

- 안전보건관계자 등에 대한 법정교육 실시 방법도 지금까지 교육대상자가 교육기관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하던 것을 지방노동관서장이 교육이수를 통지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교육참여율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한편 교통안전법에 의하여 교육을 이수한

※ 이러한 안전보건교육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등 안전·보건관계자가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보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91년도 발생한 총재해자(128, 169명)중 교육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자가 전체 재해자의 62.04%(79, 512명) 차지

경우에 한하여 잠정적으로 산안법상 직무교육을 면제해 주던것을 타 법령에 의한 직무교육기관이 교육계획을 제출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산안법상 직무교육을 면제해 주도록 하여 직무교육 이수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 그밖에도 이 규칙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검사의 비현실적 증복 검사의 폐단을 없애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 타 법에 의한 검사(설계·완성·성능·정기 및 자체검사)에 대해 이 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해 주는 기계·기구 설비의 범위를 확대하여
 -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중기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검사를 받은 경우 동일항목에 한하여 산안법상 검사를 면제해 주던것을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다른 안전보건관련 법령에 의한 검사의 경우도 산안법상 검사를 면제해 주고
 - 자체검사 대행기관이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정기검사를 면제해 주며
 -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 주기의 자체검사를 면제해 줌으로써 이중 검사에 따른 인적·물적 손실과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제59조)
- 이 규칙은 공포와 동시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당시 건강진단실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규칙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동 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도록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주요개정 내용은 그간 각종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작업장과 기계·기구에 대하여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할 안전상의 기준이 일부 현실성이 결여되어 이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추락방지를 위해 바닥, 도로 및 통로들의 개구부외에 작업발판의 끝에도 방책을 설치토록 하고(제8조)
 - 크레인등 기계의 운전시작전에 신호수를 선정하여 운전시작 신호를 하는 외에 근로자의 배치·교육·작업방법을 사전에 확인토록 하였으며(제34조)
 - 청소·정비등의 작업시 기계의 불시가동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작임시는 반드시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도록 하고(제37조)
 - 프레스, 원심기, 보일러, 양증기(리프트, 콘도라, 크레인), 아세틸렌 용접장치등 위험기계, 기구의 자체검사시에 방호조치의 이상유무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7조, 제69조, 제85조 및 제104조)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개정 사항으로는
 - 최근 ILO가입과 관련하여, 석면폐등 직업성 질환을 유발시켜 세계적으로 이의 예방이 문제시되고 있는 발암물질인 석면의 취급·사용 작업에 대한 규제조치를 대폭 강화하고자 석면을 사용하는 장소,

※ 이러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검사관련규정을 위반하여

-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를 받지 않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수입하는 자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세부규정 내용】

장 소 : 석면분진이 전파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장소와 격리되어야 함

바 닥 : 불침투성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설 비 : 근로자가 상시 접근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밀폐된 실내에 설치토록 하고 외부에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국소배기장치 : 포장등의 개봉작업, 계량작업, 배합기등의 투입작업시 설치

작업근로자 : 방진마스크, 작업복등 보호구 지급·착용, 목욕시설 설치

바닥, 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한 조치기준을 신설하고 작업 근로자들에게는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 173조 내지 제173조의 9)

○ 유해·위험작업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을 세로이 제정하였습니다.

- '91년말 현재 각종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의한 재해자가 전체 재해자의 60.39%인 77,402명에 달하고, 특히 최근 산업기능인력의 부족과 관련하여 무자격·무경험자에 의한 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 일정한 가격 및 면허가 필요한 작업으로 고압가스·압력용기·전기설비·보일러·중기 등의 취급작업, 터널내에서의 발파작업, 금속용접·용단·가열작업, 폭발·발화·인화성 물질 제조·취급작업, 방사선 취급작업, 고압선 정전 및 활선 작업, 철골구조물·배관설치·해체작업·천정크레인·타워크레인·컨테이너 크레인 조정업무, 승강기점검보수 작업등 14종,
- 일정한 기능이 필요한 작업으로 흙막이·지보공·거푸집·비계의조립·해체작업, 잠수기 사용 수중작업등 4종,
- 일정한 경험이 필요한 작업으로 동력 전도장치의 청소·주유·벨트 교체작업, 로울러기 취급작업등 총 20조의 유해위험 작업에 대하여는

— 금년 7.1부터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면허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해당분야 기능자격이 있건, 직업훈련 기본법에 의한 해당 분야 직업훈련 이수나, 3월이상의 당해 작업유경험자가 아니면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 그러나 취업제한 유해·위험작업의 종류는 넓게 하지 않고(일본의 경우 51종) 경제여건·기능인력 부족, 업계부담·가중 등의 산업현실을 감안 규제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 이러한 자격·면허 등에 의한 취업제한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작업을 직접 행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당해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 그리고 자격·면허·기능소지자의 인력부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부 장관은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해당분야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제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자격·면허·기능 습득이 없는 자는 '93. 12. 31까지 당해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기능습득을 갖추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III. 맷 음 말

- 이번 규칙 제·개정으로 날로 고조되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과 산업구조의 여건 변화에 부합되는 제도적 장치는 충족이 되었다고 봅니다.
-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산업 재해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며
 - 보다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은 이 자리에서 앉아계시는 여러분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의 주체인 노사당사자가 산업재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합심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할 때 비로소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 사업주들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근로자들을 내가족과 같이 보살피고 보호해 주어야 하겠으며
- 근로자 역시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협조하는 것이 자기자신의 신체보호뿐

이 아니라 동료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사실을 알고 안전보건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 또한 공단기술지도원을 비롯한 안전보건 전문단체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재해예방기술의 보급과 지도에 힘써주셔야 하겠습니다.

- 인력난과 더불어 한층 어려워진 여건속에서 생산상 향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귀중한 인력손실의 병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때에 우리 주변에 불행한 이웃이 생겨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 문제외에도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총액임금제』등 노동시책에도 적극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사·정,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자기자신이 하여야 할 사항』을 철저히 실천에 옮길때 비로소 산업재해는 예방될 수 있으며 선진복지사회를 창조하는 길임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❶

